2024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	
이휘근	891020-*****

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он	보수월액(.	고지금액)	소득월액(납부금액)	
월별	건강보험료①	장기요양보험료②	건강보험료③	장기요양보험료④
01월	532,380	67,790	0	0
02월	363,410	47,060	0	0
03월	1,549,020	198,530	0	0
04월	0	0	0	0
05월	592,500	76,740	0	0
06월	0	0	0	0
07월	0	0	0	0
08월	0	0	0	0
09월	0	0	0	0
10월	0	0	0	0
11월	0	0	0	0
12월	0	0	0	0
연말정산	0	0		
합계	3,037,310	390,120	0	0
총합계				3,427,430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2.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 증명서류:기본내역 [고용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민등록번호	
이휘근	891020-*****	

■ 고용보험료 고지내역

(단위:원)

월별	고지금액
01월	92,260
02월	92,260
03월	393,310
04월	0
05월	0
06월	0
07월	0
08월	0
09월	0
10월	0
11월	0
12월	0
합계	577,830

- 1. 고지금액: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실제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급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2.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3. 건설업, 벌목업 사업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4년 01~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	
이휘근	891020-*****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(단위:원)

월별	직장가입자 고지금액	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
01월	265,500	0
02월	265,500	0
03월	0	0
04월	0	0
05월	0	414,000
06월	0	0
07월	0	414,000
08월	0	207,000
09월	0	207,000
10월	0	207,000
11월	0	0
12월	0	414,000
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	0	
추납보험	험료 납부금액	0
실업크레딧 납부금액		0
합계	531,000	1,863,000
	총합계	2,394,000

- 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2. 지역가입자·추납보험료·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휘근	891020-*****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-	류			
종류	사업자번	호	증권번:	호	주피보험	자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종피보험자2((수익자)	종피보험자3(수익자)	
	삼성화재해상보	.험(주)	개인용 애니카	자동차			
보장성	202-81-45	617	124G13**	****	891020-*****	이휘근	1,404,320
	인별합계금액						1,404,320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	
이휘근	891020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4-02-17*	2 ****	일반	88,600
4-82-00*	(****	일반	547,750
9-24-01*	라****	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	120,0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636,35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120,00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756,35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5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6세 이하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부양가족(700만원)
 -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실손의료보험금]

(조회기간 : 2024년 01~12월)

■ 피보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휘근	891020-*****

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

(단위:원)

상호	상품명	보험계약자		수령금액 계
사업자번호	계약(증권)번호	수익자		구경급적 계
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	빅히트단체상해보험	120-86-65164	구글코리아 유한회사	75,200
201-81-45593	120220****	891020-*****	이휘근	7 3,200
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	빅히트단체상해보험	120-86-65164	구글코리아 유한회사	114,567
201-81-45593	120230****	891020-*****	이휘근	114,307
인별합계금액				189,767

1.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,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휘근	891020-*****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
22,113,378	10,466,679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9,765,209	0	641,670	59,800	10,466,679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213-86-15419	현대카드주식회사	일반	9,765,209
신용카드	213-86-15419	현대카드주식회사	대중교통	641,670
신용카드	213-86-15419	현대카드주식회사	도서공연등	59,800
인별합계금액				10,466,679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휘근	891020-*****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
2,229,940	12,69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12,690	0	0	0	12,69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루 종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일반	7,890
직불카드 등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대중교통	0
직불카드 등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도서공연등	0
직불카드 등	527-88-00686	주식회사 카카오페이	일반	4,800
인별합계금액				12,690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: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휘근	891020-*****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	
496,455	625,900	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 등	주택임차료 거래	합계금액
597,900	0	0	28,000	0	625,900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홈택스> 상담·불복·제보>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미발급/발급거부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- 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일련번호 : 20250228-33454561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9-

2024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: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휘근	891020-*****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종류						
		01월	02월	03월	04월	고레디사그에	
		05월	06월	07월	08월	· 공제대상금액 ·	
		09월	10월	11월	12월	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0	0	0	0	597,900	
		38,000	0	0	0		
		0	59,900	0	500,000		
현금영수증	도서.공연비등거 래	0	0	0	0	28,000	
		0	0	0	0		
		0	0	0	28,000		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-10-
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홈택스> 상담·불복·제보>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미발급/발급거부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- 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퇴직연금]

(조회기간 : 2024년 01~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이휘근	891020-*****	

■ 퇴직연금 납입내역 (단위:원)

상호	사업자번호	당해년도 납입금액 (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 포함)	당해년도 인출금액 (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중 인출금액 포함)	순납입금액 (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포함)
계좌번호	연금구분	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	ISA계좌만기전환 인출금액	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
삼성생명보험 (주)	104-81-26688	454,017	0	454,017
110019****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	0	0	0
순납입금	- 구액 합계	454,017		

※ 연금계좌(연금저축, 퇴직연금)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.

-11-

- 1. 퇴직연금 : 연간 근로자 부담금 공제 (회사 부담금 제외)
- 2. 공제 대상 : 납입액(전환 신청 금액 포함)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
- 3. 공제 한도 :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

(단,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600만원을 한도로 함)

4.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